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20.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입학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회피·배제의 기본원칙과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 담당부서는 입학전형을 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교직원 은 본교에서 재직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입학 담당부서 교직원 은 입학 담당부서에 소속한 교직원을 말한다.
4. 지원자 는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말한다.
5. 회피 는 입학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스스로 해당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6. 배제 는 입학 담당부서에서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수한 관계 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과 제4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지원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8.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는 입학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지원자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지원자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②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족(혈족 및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 배제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배제 대상은 본교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피·배제 제도 운영) ① 입학 담당부서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배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입학과 관련하여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본교 입학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 회피대상자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입학 담당부서는 교직원이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 본교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와의 특수한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④ 입학 담당부서는 입학전형 당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위촉 외부인 포함)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등을 작성토록하여 회피·배제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해당인이 입학전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⑤ 입학 담당부서는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회피·배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입학 담당부서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 교직원에 대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시기) ① 회피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 원서접수 후 평가전, 평가 진행 중에 안내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배제는 지원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서류 검증을 진행해야 하므로 원서접수 이후에 실시한다.

③ 재검증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해당 참여자가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 확인한다.

④ 사후검증은 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제6조(미신고)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사전에 회피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즉시 배제 조치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제7조(처리방안) ① 지원자와 회피·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당해 연도 모든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한다.

② 회피·배제 위반사례 발생 시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교 「교원징계규정」 및 「일반직원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〇〇학년도 신(편)입학 회피대상자 자진 신고서

■ 교직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 신고 대상자(수험생)

성 명			
지원시기	수시모집 () 정시모집 () 편입학 ()	전형명	
관 계	※ 지인 또는 기타 관계일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입학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 업 명	20〇〇학년도 신(편)입학 대학입학전형 운영		
성 명		소 속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전주대학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성확보시스템(회피·배제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정성확보시스템의 실행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교 대입전형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입학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류(면접)평가위원 서약서

소 속:

직 위:

성 명:

위 본인은 20〇〇학년도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서류(면접)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은 입학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배우자 포함)은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거나, 또는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바로 대학에 신고하고 관련 지원자의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다.
4.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원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와 전형자료의 내용에 대해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5.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교 「교원징계규정」 및 「일반직원징계규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서 명	
--------	--

총장 귀하

※ 협조사항

1.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〇〇학년도 입시에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입시기간 중에는 신고 된 본인명의 도장이나 사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신고 됨의 기준은 서약서 내 서명 란에 서명한 것임)
2. 입시관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